

##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

\*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,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·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# 1. 입찰(견적제출)에 부치는 사항

가. 용역명: 연천군 상수관로 지하안전점검(GPR탐사) 용역

나. 위치: 연천군 일원(D500이상 상수관로 매설도로 및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)

다. 용역개요: 공동조사[공동탐사·자료분석 20.441km, 목표공동 5개소(0.25개/km)]  
신속복구[유동성 채움재 주입 5개소] (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)

라. 용역기간: 착수일로부터 90일

마. 기초금액: **금47,150,000원**(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)

※ 입찰자가 면세사업자(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)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,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.

### 2. 입찰(견적)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

가. 입찰서 접수개시일시: **2026. 7. 20.(월) 12:00**

나. 입찰서 접수마감일시: **2026. 7. 22.(수) 12:00**

다. 입찰서 개찰일시: **2026. 7. 22.(수) 13:00** (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)

라. 입찰서 개찰장소: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

※ **유찰 시,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:00 입찰서 마감, 17:00 개찰**

### 3. 입찰(견적제출) 및 계약방식

전자입찰, 총액입찰, 지역제한, 견적입찰(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), 단독계약

### 4. 입찰(견적제출)참가 자격

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,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(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

업장)이 **경기도**에 소재한 업체로서,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.

- ①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제21조 규정에 의한 **엔지니어링사업(토질,지질)**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「기술사법」제6조 규정에 따라 **기술사사무소(토질,지질)** 등록을 필한 업체
- ②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**직접생산확인 증명서(세부품명: 지질연구조사서비스, 세부품명번호: 8115179901)**를 소지한 업체

※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<http://www.smpp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.

- ③ **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(GPR) 탐사 장비(탐재형 또는 일체형)를 소유하여 상시 운용**이 가능한 업체

- **차량 탐재형 장비:**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, 장비 사진(앞면, 옆면, 뒷면) 등
- **차량 일체형 장비:**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, 장비 사진(내부, 외부), 자동차 등록증 사본, 자동차등록원부(공고일 이후 발급), 보험가입증명서 등

※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**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**와 **성능검사 인증서**(국토안전관리원 발급)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. 제출 자료의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(상수팀 ☎031-839-4323)에서 판단합니다.

나. 본 용역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 및 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」 제44조에 의거 **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** 용역입니다.

다.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'조세포탈 등을 한 자'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
라.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.

마.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,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」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 【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s://www.g2b.go.kr/>) 이용】

※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및 사업자등록증(개인)상 **대표자(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), 주소, 상호**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
## 5. 공동계약: 불가

## 6. 현장설명: 없음(생략)

## 7. 입찰보증금

본 건은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.

## 8. 입찰(견적)서 제출방법

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## 9.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$\pm 3\%$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,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천한(2개씩 선택)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.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.
- 나.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**견적가격을 88%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**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- 다. 동일가격으로 입찰(견적제출)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,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. (**재입찰은 개찰당일 16:00 입찰서 마감, 17:00 개찰.** 단, 재입찰, 변경공고,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.)
- 라.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(입찰순위)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.
- 마.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을 따릅니다.

## 10. 견적의 무효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.

## 11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

- 가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·보건 확보 의무이행 약속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·보건 확보 의무이행 약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나.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,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**안전·보건 확보 의무이행 약속서 및 안전·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- 라.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·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**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**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,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# ※ 별첨 [안전·보건 확보 의무이행 약속서] 참고

####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## 12. 기타(유의)사항

- 가. 본 용역은 용역 이행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**하도급을 제한**합니다.
- 나.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,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다. 우리 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라.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**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 금액(부가가치세 제외)의 1.5%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**하여야 합니다.
- 마.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【전자조달콜센터(☎1588-0800)】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바. 본 입찰(견적제출)안내문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g2b.go.kr/>) 및

우리 군 홈페이지(<https://www.yeoncheon.go.kr/>)에 게재되며,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사. 기타 문의처 안내

- 계약사항: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계약담당(031-839-4320)
- 과업내용: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(031-839-4323)
- 전자입찰: 조달청콜센터(1588-0800)

**2026년 7월 15일**

**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**

[별첨] 안전·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

## 안전 · 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

연천군으로부터 “          (사 업 명)          ” 도·수급(수탁)받은 (업체 대표자) 은(는)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,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.

**제1조(안전준수)** 안전보건목표·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**제2조(안전작업)**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,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. 또한,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·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, 연천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
**제3조(안전교육)**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.

- 1)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
- 2)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
- 3) 안전·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

**제4조(비상조치)**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.

**제5조(위험성개선)** 작업개시 전·후로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.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시 적극적으로 응한다.

**제6조(보호구)** 계약업무 수행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자료제출 협조)**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한다.

(업 체 명)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,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·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.

20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확약자    상    호:

주    소:

대 표 자:

(인)

**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**

[별첨]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

[별지 제10호 서식]

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1쪽)

|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주자 | 발주기관    | 발주부서 | 발주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발주내용    |      | [ ] 공사 [ ] 용역<br>[ ] 물품 [ ] 기타 |
|     | 수의계약 사유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약상대자<br>(확인인) | 성명  | 소속 | [ ] 개인 [ ] 법인<br>[ ] 단체 [ ] 기타 |
|                | 연락처 | 주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              |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②               | 계약 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③               | 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④               | 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⑤               |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⑥               |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⑦              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⑧              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